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33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이만희·김기웅·박대출

이종배 · 김미애 · 신성범

권영진 · 김장겸 · 임이자

서일준 · 송석준 의원

(119]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업은 제도 도입 목적인 농어가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4도(都)3촌(村)'라이프스타일의 확산, 힐링·워케이션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의 추구로 다양한 목적의 귀촌, 농어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도 각광을 받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은 과소화·고령화의 가속화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역 퇴색의 상징인 빈집이 지역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자산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관광숙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의 활용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를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26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난 7월 「농어촌민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규모 기준 완화, 식사 전면 허용, 사업자 지위 승계 보장 등 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불법영업에는 엄정 조처하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한편, 농어촌민박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정비법」은 '95년 시행 이후 규제 완화와 관리체계 강화 등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듭 하였으나, 현행 정비법 체계에서는 효과적인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의 육성은 물론 불법·편법 영업의 증가 등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

-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되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함)을 거주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다. 투숙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식품위생법」 제4 1조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과 단기영업 제한, 보험 가입 의무, 상속 지위승계 허용, 등록 수수료 부과, 출입·검사 거부·방해·회피 금지 등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13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 신설).
- 라.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단체일 경우 자본금을 제한하고,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1인이 상 두도록 하며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형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14 신설).
-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박의 밀집규모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해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15 및 제11조의16 신설).

바.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해제 등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2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의2. "준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1의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 물을 말한다.
- 7의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이하 "빈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의2(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다만,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객실 수 와 시설 및 설비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항 후 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내용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을 정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⑧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 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피성년후견인
 - 2.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11조의4(같은 사업장에서의 등록금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 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을 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제11조의5(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증 및 요금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장에 갖추어 두 어야 하며, 투숙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간판,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의 홍보매체에 사업장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 수하여야 한다.
-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교육을 받아야 한다.
-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7.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 및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또한 같다.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할 수있다.
- 제11조의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11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의7(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제11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8(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 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 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9(보험 등 가입 의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의10(농어촌민박사업자의 승계)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경우 그 상속인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 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11조의11(지도·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을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객실 수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 5.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

- 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6. 제11조의8을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7. 제11조의9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11조의11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11.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 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제6호 또는 제10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

다.

- ④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의1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해당 사업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한 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1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12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의3(제11조의14부터 제11조의1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3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과 민박단지 지정 등

- 제11조의14(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 ①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단체일 경우 그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③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영업일수, 안전관리사항 등 운영형태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의15(민박단지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이 밀집되어 있을 것

- 2.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이 수려한 지역 특성을 갖출 것
-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민박 단지의 경관조성 및 정비,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16(지정 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은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11조의15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2. 주변경관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 박사업"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결과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을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으로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위생·소방안전, 시설기준의 준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11조의8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⑥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의3(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의1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 2. 제11조의16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 지정해제
- 제25조의4(수수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3. 제11조의7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4. 제11조의10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승계 후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11조의12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 6. 제11조의12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 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자"를 "대표자 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어 촌민박사업을 한 자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6.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7. 제11조의11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8. 제11조의12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자는 제1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신고"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을 삭제한다.

제86조 및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호 또는 제9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

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118조제6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4호 중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을 "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준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u>말한다.</u>
<u><신 설></u>	1의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
	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
	물을 말한다.
2.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7의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
	집(이하 "빈집"이라 한다)을 이용
	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
	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
	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
	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
	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u><신 설></u>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다만, 빈집을 이용한 농 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해당하지 아니한다.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객실 수 와 시설 및 설비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 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 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 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 설>

등록내용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 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⑧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민 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피성년후견인
- 2.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 우는 제외한다.
- 3. 이 법을 위반하여 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

는 자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다)
 - <u>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u> <u>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u> 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1조의4(같은 사업장에서의 등록금 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의 등록을 하고 6개월 이 내에 폐업을 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농 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 제11조의5(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1조의2제 7항에 따른 등록증 및 요금표를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장에 갖추어 두어 야 하며, 투숙객이 요구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홍보매체에 사업장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제1 1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 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 수하여야 한다.
 -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서비스 ·위생·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7.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 및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또한 같다.
<u><신 설></u>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서비스・위생
	· 소방안전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u><신 설></u>	제11조의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11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식품위생
	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이 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것
	으로 본다.
<u><신 설></u>	제11조의7(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지아니한 자는 제11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11조의8(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 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 다. <신 설> 제11조의9(보험 등 가입 의무)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 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 <u>적·물적</u>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의10(농어촌민박사업자의 승계) <신 설>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11(지도·감독 등) 시장·군 <신 설> 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 ·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12(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 <신 설>

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이후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을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 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객실 수 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 5.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6. 제11조의8을 위반하여 카메라나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7. 제11조의9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11조의11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11.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 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 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제6호 또는 제 10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장 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10호를 위반

- 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 2에 따른 등록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 업 표지물의 제거
-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 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 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 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 x] - 사·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1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해당 사업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한 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1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12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의3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과

<신 설>

<신 설>

민박단지 지정 등

- 제11조의14(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
 - ①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단체일 경우 그 자본금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 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1인 이상 두 어야 한다.
 - ③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영업일수, 안전관리사항 등 운영형태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의15(민박단지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
 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농어촌민박이 밀집되어 있을

 것
 - 2.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이 수 려한 지역 특성을 갖출 것
 -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요건의 세 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민박단 지의 경관조성 및 정비,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16(지정 해제)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단 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11조의15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2. 주변경관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신 설>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 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 • 휴양 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 • 휴양 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 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 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 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되	는	경	우
_	_	O	- 1

-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사업의 등급결정 결과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위생·소방안전, 시설기준 의 준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 운 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 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11조의8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에 따라 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구 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구 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 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 여 주어야 한다.
- ⑥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 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3(청문)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신 설>

<신 설>

제27조(벌칙) <신 설>

<u>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u> <u>한다.</u>

- 1. 제11조의1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 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 2. 제11조의16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 지정해제
- 제25조의4(수수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 변 경등록을 한 이후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u>자</u>
 - 3. 제11조의7를 위반하여 농어촌민

(생 략) <신 설> 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4. 제11조의10에 따른 농어촌민박사 업을 승계 후 등록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 5. 제11조의12제1항에 따른 사업정 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 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 6. 제11조의12제5항에 따라 관계 공 무원이 붙인 게시물・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 상한 자
-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7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u>대표자</u>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6.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7. 제11조의11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8. 제11조의12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